

#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2012. 6.

※ 본 상담사례집은 국민신문고, 우편질의 등을 통해 접수된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중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검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별도의 책자 인쇄 없이 파일 형태로만 제공됨)

## ● ● 목 차 ● ●

I. 개인정보 일반	2
II. 개인정보의 처리	4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4
2. 개인정보의 제공	11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15
4. 개인정보의 위탁	18
5. 개인정보의 관리	21
6.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등	25
III. 기타사항	27

### 《참고》

개인정보보호법령 3단 비교표

## 1. 개인정보 일반

Q 1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에 관한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 3.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성명" 정보만 있다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동명이인 등), 개개인의 "주소.연락처" 등과 결합되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Q 2

• 영리법인이 아닌, 후원, 기부 재단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 비영리법인인 후원, 기부재단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개인정보처리자)모두 적용됩니다.

Q 3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는 대상, 즉 적용대상 및 범위가 달라지는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있었습니다.
  -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그러나 법 시행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72개 업종 320만 전체 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도 대상이 됩니다.

Q 4

•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중 어느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 「의료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의료법을 우선 적용하되, 의료법상 규정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안부가 검수한 KISA 상담집 사례 일부 인용(1~3번)

## II. 개인정보의 처리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Q1

•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받는다면 최초 방문 시에만 받으면 되는지?

-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을 경우 최초 방문 시에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후 이용 목적이 추가되거나 제3자 제공 등 처리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전화번호는 처방전 오류 등 위급한 상황 시 연락이나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의 안내(진료예약시간, 검사결과 통보 등) 등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이외의 사항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병원소식, 건강정보, 백신접종 홍보 등 정보주체의 직접적인 진료와 관계없는 내용을 문자, 우편 등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병원에서 쓰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동의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병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수집 목적을 고려해서 동의서를 받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생략)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6. (생략)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1. 진료기록부
  -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 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 다.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 라. 진료 일시분(日時分)

Q2

• 의료법상 명시적 근거는 없지만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초진 환자 접수시 종교, 학력, 직업, 결혼유무 등의 정보를 기재토록 하여 진료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한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사상·신념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법령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상·신념'이란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형성된 믿음이나 생각 등으로서 이데올로기,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을 말함

- 다만,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학력, 직업, 결혼유무, 전화번호, 종교 등의 개인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환자에게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의 SMS를 보내는 것은 동의 없이도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예방접종 예약 안내도 포함되는지? 만약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접종일자에 대해 안내 받기 위한 정보활용에 동의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가능한지?

- 예방접종 예약도 일부 포함됩니다. 진료와 관련한 목적 내의 범위로는 예약된 내용에 대한 안내, 간염 1차 접종받은 사람에게 2차접종을 안내하는 것과 같이 동일 진료와 연결된 예방접종 사항에 대한 안내, 검사결과 통보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진료와 관련한 목적 내의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하므로, 당해 진료와 관계없는 예방접종 안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해 정보주체(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의서는 단순히 '정보활용에 동의함'이라는 문구만 추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동의서와 수술동의서 등을 내용 한 장에 다 들어가도록 만든 후에 각각 동의하는 부분에 서명을 받아도 되는지? 또한 수술 동의서상의 환자 보호자 정보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동의서와 수술동의서를 한 장에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관련 조항에 따라 동의를 받으실 때에는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항목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보호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⑥. (생략)

Q5

• 홈페이지 진료상담 코너에 상담을 원할 경우 성명, 답변을 원할 경우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홈페이지에서의 진료상담은 의료법상 진료행위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민감정보 수집시)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6

•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최초 1회의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다시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환자가 처음 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감기로 진료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프라이버시가 좀 더 보호되어야 하는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아도 이전 동의서로 같음할 수 있는지?

- 비록 진료과목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병원은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로 취급되므로 최초 동의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즉, 환자는 특정 진료과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진료과가 속한 해당 병원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다만,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이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될 경우에는 해당 이용목적에 맞게 별도의 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Q7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내의 안내사항을 병원 홍보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환자에게 읽게 한 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고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동의한다는 간단한 내용만을 인쇄 및 출력하여 동의서에서 명을 받아도 되는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내용과 동의여부 확인란이 분리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로 확인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내사항과 동의확인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분쟁 발생시)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과 병원의 안내사항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Q8

• 성인병 검진 결과를 우편물로 발송하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시거나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항부터 시작해서 위험수치 근접해서 진료를 꼭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 병원에서 건강 관리차원에서 유선상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안내해도 되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처음부터 성인병 검진 전 검사결과에 대한 유선상의 설명에 대한 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9

• 진료실 앞 대기명단 모니터에 성명을 다 표시해도 되는지?

- 병원에서 환자의 이름을 모두 표기하는 것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 시행 초기에는 이름 중 일부를 가리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민감한 진료과에서는 '홍\*동'처럼 이름 중 일부를 \*표 처리하는 등 성명 전체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Q10

• 병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외부 설문조사 기관을 통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 만약 병원에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당초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를 외부 설문조사 기관에 위탁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의한 계약 및 위탁사실 공개 등)

Q 11

• 치료결과 혹은 병원정보에 관해 문자발송을 하려고 하는데, 법이 시행(2011.9.30)되기 이전에 SMS수신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환자 대상으로 SMS나 DM을 전히 발송하지 못하는 것인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수신 거부 번호를 등록하여 원치 않는 고객들의 번호는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한지?

- 2011년 9월 30일 이전에도 내원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질병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SMS, 전화, DM(소식지)를 통해서 전했다면 동일한 서비스를 위해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4조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법 시행일(11.9.30) 이전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내로 보유,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처리 정지 등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명시적인 동의를 요하므로, 단순히 수신거부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동의를 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4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Q 12

• 동의서 양식이 보통 A4 용지 1장 정도의 분량이 되던데 “SMS, DM 등 병원 안내, 홍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라고 한 줄로 압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 문의하신 예와 같은 동의는 법률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재하도록 한 것이므로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2. 개인정보의 제공

Q 13

• 경찰서에서 수사를 위한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관없이 무조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는지?

-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가 환자의 진료기록에 관한 것이라면 의료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21조2항6호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06호,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진료기록 외의 정보나 보호자 등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경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히 5호부터 9호는 제공하는 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 한합니다.

Q 14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경찰서에서 수사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재직여부 등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 공공기관의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도 제공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15

• 법원으로부터 진료 받은 환자의 진료내용에 대해 민사소송법제294조 및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거 사실조회 촉탁을 의뢰받을 경우 제공해도 되는지?

- 만약 사실조회촉탁을 의뢰받았다는 사유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는 진료기록의 열람 가능범위 및 필요서류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열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되어 변호사 및 사설의료자문 기관에 수진자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넘겨 법률적 책임 유무를 판단하려고 할 경우 수진자로 부터 개인정보 이용, 제공 중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

- 병원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변호사 및 사설의료자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자료제공은 동의 없이 제공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외부에서 전화를 통해 환자본인 또는 가족 또는 외부 병원직원이라고 하면서 환자진료정보(개인정보)에 관하여 문의할 때 알려줘도 되는지? 또는 가족의 보험정산을 위해 병원에 영수증, 처방내역 등을 팩스로 요청했는데 보내줘도 되는지?

- 전화를 통해 환자진료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기록열람 등)**

-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이하생략)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

-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Q 18

• 만약 병원에서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묻는 전화가 약국으로 오면 말해줘도 되는지?

- 환자의 응급상황시 약국은 환자의 약 복용 내역을 병원에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①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생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Q 19

• 전화상으로 병원에 입원여부를 물어볼 경우 알려줘도 되는지?

- 환자 입원 여부는 환자의 개인정보로서 환자의 동의없이 알려 주시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및 운영

Q 20

• 환자 동의 없이 대기실이나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여 녹화하고 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신과 외래 진료실에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과정을 녹화, 녹음한 후 이를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특정 환자와 의료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진료실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CCTV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녹화 및 녹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라도 사생활 침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촬영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대기실은 법 제25조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CTV를 통한 녹음은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생략)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⑥.~⑧. (생략)



Q 21

• 치과 진료실은 목욕실, 화장실과는 달리 신체부위 노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치과 진료실 내 CCTV 설치가 가능한지?

- 특정 환자와 의료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병원 진료실은 비공개 장소로서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영상)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22

• 병원 내 CCTV가 있는 곳마다 CCTV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 건물 내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는 경우 CCTV마다 안내판을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Q 23

• 응급실내 응주환자, 조직폭력배 및 불량배 등이 진료중인 의료인에게 폭언, 폭행과 응급실 기물파손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CCTV를 설치하려고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도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하고 있는데 CCTV를 운영해도 되는지?

- 병원 응급실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등 법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인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CCTV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먼저, 병원 응급실 내의 '접수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보호자 등이 비교적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 다음으로, 병원 응급실 내의 진료실, 치료실 등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장소에는 촬영대상 정보주체(환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처리자(병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5. 생략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偽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Q 24

• 치과인데 진료실이 개방형으로 모든 유니트 체어가 한번에 녹화되고 있어 CCTV 녹화 동의를 거부하는 분들은 진료가 불가능하게 구성이 되어있다. 이런 경우 진료를 거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만약 영상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시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말씀하신 경우 진료실은 비공개장소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영상)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하는 정보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동 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Q 25

• 약국에서 DB 관리시 사설 정보처리업체의 데이터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 약국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사설 정보처리업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약국이 소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절차와 관리감독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 26

• 타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타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하실 필요는 없으나, 서면에 의한 계약 및 위탁사실 공지 등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⑤.~⑦.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 시 조치)

-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 위탁 업체를 통해 검사결과 안내, 예약안내, 고객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이다.

• 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맞춤형정보동의서(SMS)+ 진료신청서를 한장으로 하여 고객에서 항목별로 서명란을 만들어 동의를 구해도 되는지?

• 2) 위탁업체의 경우 개인정보취급방침안내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명시를 하면 맞춤형정보동의서(문자 수신동의 및 거부)를 안받아도 되는 것인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릴 수 있다면 동의서의 분량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병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업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로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자(병원 등)가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관리



• 네트워크병원이 각 지정별로 각각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웹사이트관리, 회원관리, 게시판(상담예약)관리 등 DB는 통합관리되어 서울 본점 마케팅 담당자 1명이 하고 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 네트워크 병원들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법 제31조에 따라 각각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네트워크 병원의 웹사이트 회원정보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하며, 회원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도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A라는 지점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소속 병, 의원들에서 재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 기록 및 개인정보를(민감정보 등을 포함) A로부터 공유받아 수집, 보관할 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일 경우 각 지점명을 모두 명시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일률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을 공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하며, 제23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록 서류를 별도의 보관시설이나 잠금 장치의 설치 등의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과 중 수시로 사용하는 의료기록은 잠금장치를 열어둔 채 업무공간에서 쓸 수 있으나, 일과 후 등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동의서를 영상스캔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꼭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 아울러, 동의서를 스캔파일 등을 통하여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동의서 원본과 동일성이 완벽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영상 스캔을 통해 전자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종이로 작성된 원본과 이를 스캔한 전자파일간의 동일성에 대하여는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법원은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 다만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법령상 별도의 보관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등을 고려하여 동의서에 표기된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까지는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이하생략)

Q 32

- 내과, 방사선과를 운영하며 20병상 미만으로 의원을 개설하려한다.
- 1) DB암호화, 전송보안(메일암호)등의 작업이 필요한지?
- 2) 진료또는 검진후 사후관리(해피콜, 추가검진/진료안내 문자발송등)에 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3) 개인의원에서의 정보보호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예약확인문자, 검사결과 통보 문자발송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만족도 조사, 건강정보, 병원소식 등 진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자 발송을 하신다면 이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방문하시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참고자료를 보실 수 있으며, 메뉴 중 자료실/참고자료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안부/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중, 9월중 배포 예정)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개인정보의 일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②.~③. (생략)

## 6.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등

Q 33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청원이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에도 적용되는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작성을 위해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법령상 의무 수집대상이므로 삭제·정정요청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제2항(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⑥.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및 36조(열람, 정정, 삭제 등)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간단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법에서 정한 신청서를 받고 통지서로 회신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 해줘도 되는지?

- 열람요청 내용이 간소히 처리될 수 있는 성격으로서 별도의 신청서를 받거나 통지서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해당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와 통지에 관하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열람 등의 요구 내용을 보다 명확화하고 열람등을 요청받은 기관에 일정기간내 통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하생략)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②~③ 생략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III. 기타사항

• 병원홈페이지에서 인터넷진료 예약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진료예약(대리예약)도 가능한지? 본인의 아이디로 들어가 타인의 진료예약을 할 경우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지?

- 대리진료를 예약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며 단순히 입력을 대행해준 자로서, 대리 예약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A와 B가 공동 개원을 하다가 A가 독립해 나갈 경우, 병원 전체 환자의 전자차트를 복사해 나갈 수 있는지? (혹은 A의 환자 차트만 복사해 나가도 되는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기존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별도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분리하고 진료의 연속성 유지·기존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의 지위. 그간의 진료관행에 따라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공동개설 기간 중의 진료기록 등을 복사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을 것이며,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보관중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 ④.~⑤. (생략)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이하생략)

3

- 협회가 회원명부, 회원다이러리, 회원수첩 등을 제작할 시 각 회원에게 개인정보 처리(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미포함)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만일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 회원수첩 등에는 경우에 따라 본인사진, 성명, 근무처, 근무처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출신학교, 졸업년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됨

- 귀 협회가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회원명부 등을 제작한 후 귀 협회 소속 회원에 한하여 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 협회가 회원명부 등의 제작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3항(적용의 일부 제외)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생략)

4

- 협회 회원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회가 동 회원의 성명, 소속 병원명, 근무처 주소·전화번호를 회원명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명백한 의사표시에 반하여 당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 등)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2호(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5. (생략)

5

- 회원의 (병의원에 취업 중인 근무자) 근무처 주소 및 전화번호도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 병·의원 근무자의 근무처 주소 및 전화번호는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당해 병·의원에 대한 정보로 보아야 하나, 동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7. (생략)

• 회원수첩 등을 유관단체나 유관기관에 배포할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 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내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서류를 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항(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의를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지?

- 반드시 서면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며, 우편, 팩스, 전화,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이하생략)